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

사 건 2012가단 310091 손해배상(산)

원 고 김 관 영

피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변경합니다.

다 음

변경된 청구 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90.124.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9.18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 원인

1.,2. 개요 및 손해배상 채무의 발생

소장기재와 같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2010.09.18.부터 2015.05.01까지 비급여등의 지출된 진료비입니다

- 내역 ; 근로복지공단 인천중앙병원(본인부담A, 비급여B, 선택진료C.)
944.610원 (A+B+C) (갑 제9-1호증 참조)
인천중앙병원 처방약의 환자 부담액 ; 140.630원 (갑제9-1호증)
- 합계 ; 1.085.240원
- 향후 추가진료비는 재요양 신청을 하거나 추가배상소송으로 받겠습니다.

나. 일실수익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의 기초사실 및 (2)의 계산에서와 같이 월 12분의 5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한 금 293.039.569원입니다.

(1) 기초사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3.8.11.
연령(사고당시) ; 47세 1개월

(나) 직업 및 가동 일수 ; 조경공 22일

(다) 소득실태 ; 이사건 사고일인 2010.9.18.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매월 금 1.975.314원 (89.787×22 일), 그 다음날부터 2011.8.31.까지는 매월 금 1.933.910원 (87.905×22 일), 그 다음날부터 2011.12.31.까지는 매월 금 1.981.584원 (90.072×22 일), 그 다음날부터 2012.8.31.까지는 매월 금 2.101.880원 (95.540×22 일), 그 다음날부터 2012.12.31.까지는 매월 금 2.273.964원 (103.362×22 일), 그 다음날부터 2013.8.31.까지는 매월 금 2.307.888원 (104.904×22 일), 그 다음날부터 2013.12.31.까지는 매월 금 2.490.268원 (113.194×22 일), 그 다음날부터 2014.8.31.까지는 매월 금 2.493.282원 (113.331×22 일), 그 다음날부터 2014.12.31.까지는 매월 금 2.623.104원 (119.232×22 일), 그 다음날 2015.01.01.부터 60세에 이르는 2023.08.10.까지는 매월 금 2.738.186원 (124.463×22 일), (갑 제9-2호증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개별직종노임단가표 조경공참조)

(라) 가동기간 ; 조경공으로 60세에 이르는 날까지(경험칙)

(마) 후유장애 및 현실적 사실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애 ; 슬관절완전강직

현실적 사실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 ; 100%

(2) 손해액의 계산 (단,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버림)

(가) 일일수익

● 2010.09.18.부터 2010.12.31. 까지 3개월

1.975.314.원 $(89.787 \times 22\text{일}) \times 100\% \times 2.9752 =$ 5.876.954원

● 2011.01.01.부터 2011.08.31. 까지 8개월

1.933.910원 $(87.905 \times 22\text{일}) \times 100\% \times 7.7582(10.7334-2.9752) =$
15.003.660원

● 2011.09.01.부터 2011.12.31. 까지 4개월

1.981.584원 $(90.072 \times 22\text{일}) \times 100\% \times 3.7871(14.5205-10.7334) =$
7.504.456원

● 2012.01.01.부터 2012.08.31. 까지 8개월

2.101.880원 $(95.540 \times 22\text{일}) \times 100\% \times 7.3994(21.9199-14.5205) =$
15.552.650원

● 2012.09.01.부터 2012.12.31. 까지 4개월

2.273.964원 $(103.362 \times 22\text{일}) \times 100\% \times 3.6159(25.5358-21.9199) =$
8.222.426원

● 2013.01.01.부터 2013.08.31. 까지 8개월

2.307.888원 $(104.904 \times 22\text{일}) \times 100\% \times 7.0723(32.6081-25.5358) =$
16.322.076원

● 2013.09.01.부터 2013.12.31. 까지 4개월

2.490.268원 $(113.194 \times 22\text{일}) \times 100\% \times 3.4595(36.0676-32.6081) =$
8.615.082원

● 2014.01.01.부터 2014.08.31. 까지 8개월

2.493.282원 $(113.331 \times 22\text{일}) \times 100\% \times 6.773(42.8406-36.0676) =$
16.886.998원

● 2014.09.01.부터 2014.12.31. 까지 4개월

$$2.623.104\text{원} (119.232 \times 22\text{일}) \times 100\% \times 3.3161 (46.1567-42.8406) = 8.816.252\text{원}$$

● 2015.01.01.부터 2023.08.10. 까지 103 개월

$$2.738.186\text{원} (124.463 \times 22\text{일}) \times 100\% \times 72.6189(118.7756-46.1567) = 198.844.055\text{원}$$

● 일실수익 합계금액

$$= 301.644.609\text{원}$$

(나) 공제금액

● 근로복지공단 ; 휴업급여 5.393.040원, 장애급여 3.212.000원

● 공제금합계 ; 8.605.040원 (갑3호증 참조)

(다) 공제금 공제 후 일실수익

● 일실수익 ; 293.039.569원

● 적극적손해 ; 1.085.240원

다. 위자료 ; 96.000.000원

- 2010년 9월 18일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무과실로 노동능력 100% 상실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민법 390조)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귀책사유와 (민법제750조)불법 행위,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며 재해자에게 배상금을 적게 주려는 악의적인 불순한 목적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업주들은 산업재해를 억울하게 당한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위로의 말이나 사과도 없었으며 불의의 산업재해로 불구자 장애인이 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파괴되어 무지막지한 고통의 늪에서 신음하는 원고가 합당한 치료

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였습니다.

사고 후 산재보상이나 손해배상 관련하여 원고는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수 없이 받았고 부당한 산재 치료와 보상에 자구책으로 저항하다 모욕죄로 엮이 어서 의무 없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없었거나 피고인 사업주들이 재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성실 하게 하였다면 원고가 자구책으로 저항하다 전과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등)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때 최 고 9천6백만원을 다인정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 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분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에 공감을 합니다.

원고는 사고로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현재 신체적인 활동능력은 꼬부 랑 할머니나 3~4세 아기보다 못한 정도이며 상병상태는 더욱더 나빠지고 있고 남은여생을 보통사람들과 격리되어 장애인의 공간에서 살아가야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나 실정법에서 허용하는 한 도인 위자료 9천6백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라. 소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90.124.809원 (적극적손해1.085.240 원, 일실수익 293.039.569원, 위자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10.9.18.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 론

소장기재와 같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9-1호증의 근로복지공단 인천중앙병원(본인부담A, 비급여B, 선택진료C.), 인천중앙병원 처방약의 환자 부담액
2. 갑 제9-2호증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개별직종 조경공 노임단가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신청서 부분 1통

2015. 5.

원 고 김 관 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귀중

열람용